

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

성 북 구
(아동청소년과)

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의안 번호	15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9
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창의적인 교육·문화·여가 제공을 위한 공간인 성북 청소년 문화의집의 위탁기간이 2023.12.31.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재위탁하고자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현황

시 설 명	위 치	규 모	종사자	소요예산 (23년기준)	現)위탁기관
					협약기간
성북청소년 문화의집	성북구 솔샘로 107 (정릉4동)	1,353㎡ (지상1층 ~3층)	8명	(구비) 650,360천원 (국비) 12,204천원	한국스카우트연맹 (관장:박종국)
					- 최초위탁: 18.2.~21.1. - 재계약: 21.2.~23.12.

나. 위탁운영 개요

- 위탁기간 : 3년(2024.1.1. ~ 2026.12.31.)
- 위탁사무 : 「성북 청소년 문화의 집」 관리·운영에 관한 사무
 - 청소년 문화의집 각종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·관리
 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
 - 청소년의 자치·자율 활동 지원 등

○ 수탁자격 :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

[청소년기본법]

제3조제8호 “청소년단체”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[청소년기본법 시행령]

제2조(정의) 법제3조제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”라 함은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-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
- ② 청소년활동, 청소년복지,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
- ③ 청소년학과·교육학과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실적이 있는 대학(학교법인을 포함한다.)

○ 선정방법 : 공개모집 및 위탁심사위원회 구성·심사

※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(최초위탁 후 재계약 1회)로 재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실시

3. 관련근거

가.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
[청소년활동진흥법]

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내용, 위탁계약의 기간·조건·해지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 단체(이하 “위탁운영단체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.

나.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[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16.12.29.)